

지방재정분야 주요 질의·회신

유윤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1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회신사항을 정리한 것임

1. 보경북 영양군 빛갈찬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질의회신

Q 질의내용 1

- "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 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와 같이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Q 질의내용 2

- "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여부

A 회신내용 2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군의 ‘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 이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설립조례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3

- "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 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양 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구축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3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는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자치단체가 ‘영양고추나라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조합법인의 사무가 **영양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영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의 여부 및 **귀 자치단체의 조례에 설립 및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정정책과-2298(2011.05.11)】

2.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관련 질의회신

Q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지방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경우, 조례의 핵심내용인 주민참여 예산범위나 참여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부 동의 없이 지방의회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제정은 입법발의 주체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일 이전까지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나 참여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해당자치단체의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7조제3항).

【재정정책과-2348(2011.05.13)】

3. 기 사용한 예비비 결산 불승인 효력 여부

Q 질의내용 1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A 회신내용 1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이루어진 예산집행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의회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 견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질의내용 2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승인시 집행된 예산 전부를 불승인 할 수 있는지? 불승인 한다면 행정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또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A 회신내용 2

-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 지출액, 예산 전용, 이월

액 및 불용액 등 분야별로 계산의 과오여부,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 실태, 재정운영의 합당성·적법성·적정성 등을 사후심사하는 것이므로,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집행한 예산까지 전부를 불승인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 회신내용 3

- 정상적으로 결산 승인한다면 예비비 사용한 것도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예비비만을 제외하고 결산승인 할 수 있는지?

Q 질의내용 3

- 예비비의 결산 승인여부는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재정정책과-2427(2011.05.20)】

4. 중앙투융자심사 관련(1)

Q 질의내용

- 인천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캠퍼스 증축사업(1,038억원(시비 29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부담 1,009억원))이 자체심사 대상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운영기준(매뉴얼)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때 자체재원이라 함은 자체세입 즉,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으로 그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기관(인천도시개발공사)이 부담하는



재원을 단순히 세입조치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체세입으로 보는 것은 자체재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지방재정법령 및 운용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기관이 추진하는 캠퍼스 증축사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532(2011.05.25)】

5. 중앙투융자심사 관련(2)

Q 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800.5억원(국비 330억, 지방비 0.1억원, 민간투자 570.4억원)이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투융자심사는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의 타당성, 중복여부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심의제도로써 총사업비(국비+지방비+민간+기타자본 등) 기준으로 투융자심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속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되는 바,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투융자사업으로 보고 총사업비 기준(800.5억원(SPC 설립 0.5억원, 산업단지조성 800억원))으로 투융자심사 기관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551(2011.05.26)】

6.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부담금 세입예산 편성 가능 여부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30%)에 대하여 부담금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열린녹지조성 사업은 시비와 구비 7:3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자치구 부담의무)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가 열린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을 검토하는 사항은 보조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일 보조사업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매칭지원을 하고 일부 사업은 주민분담금으로 추진할 경우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지역내 아파트 주민이 자진하여 기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5조〈별표5〉에 의거 기부금(228-08) 또는 기타 접수입(228-09)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616(2011.05.30)】

7.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관련 유권해석

Q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에는 일시차입금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한도액’이 총액개념인지, 아니면 한도개념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세입이 수납되는 시기와 경비지출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세입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의 개념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시적 자금부족 상황에 대비하는 재원확보 방법이므로, “갑설”의 의견과 같이 일정시점에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2663(2011.05.31)】

8. 재정보전금 시·군 교부관련

Q 질의내용 1

- 예산 편성과 배분기준이 1개월간 차이가 있고,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연말에 취득세 감면 등 제도변경 및 경기회복 등으로 예상치 못한 초과 세입분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을 교부하고 있는 현 제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군의 전년도 12월 도세 징수분(초과징수분 포함)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전년도 예산으로 출납폐쇄기한인 회계연도 종료 후 2월까지 교부하는 것과,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정산에 의해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하여 가감 지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전년도 12월 징수 도세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Q 질의내용 2

- 전년도 도세 13~15월분(익년1~3월10일까지) 세입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기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A 회신내용 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 말일이 속하는 연도” 로 하고 있고, 동조 제3호 단서에는 교부금, 보조금 등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년도 도세 징수분중 다음연도 1.1~3.10까지 징수한 세입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다음연도 당초예산 세입(지년년도 수입) 및 세출(과년도 수입에 대한 재정보전금)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Q 질의내용 3

- 시군에서는 전년도 12월분(11월징수분) 미지급분을 당해 연도 1월에 교부 할 경우 당해 연도 세입처리 하여야 하는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A 회신내용 3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제3호 단서에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 · 군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시 · 도와는 달리 동 세입에 대한 예산을 어느 회계연도예산으로 편성하



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시·도에서 전년도 도세 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익년도 1월에 교부할 경우 시·군은 전년도 세입예산(재정보전금, 순세계 잉여금 등) 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 재정보전금(전년도 징수분 등) 등으로 편성·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재정정책과-2725(2011.06.02)】

9.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Q 질의내용 1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의 범위와 그 금액

A 회신내용 1

- 채무부담행위 범위 관련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채무부담행위는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할 것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은 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행위액은 ‘09년말 현재 9,107억원입니다.

Q 질의내용 2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에서 ‘그 밖의 행위’의 의미

A 회신내용 2

- ‘그밖의 행위’로는 시·도가 시·군·구에 또는 자치단체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Q 질의내용 3

- 생활폐기물시설 사업을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3

- 채무부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서의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명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과-2759(2011.06.03)】